

제 571 호  
1976.8.17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   구 자 춘  
편집 : 문화공보실장    조 용 하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화 75-6090

# 시 보

차 례

◎ 규    칙		
제 1604 호	서울특별시 소방대상물 검사등에 관한규칙 폐지규칙 .....	3
◎ 훈    령		
제 456 호	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개정 .....	3
◎ 고    시		
제 180 호	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 .....	3
제 191 호	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 .....	4
제 197 호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.....	8
제 198 호	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 .....	9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제 199 호 도시계획시설 (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)  
지적승인..... 9

제 201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( 풍차지구 ) 일부변경  
지적승인.....10

◎ 공 고

제 189 호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.....10

제 190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.....11

◎ 사 령 .....11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 소방대상물 검사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준 인  
1976년 8월 17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604 호

서울특별시 소방대상물 검사등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

서울특별시 소방대상물 검사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훈 령**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6년 8월 17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준 인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456 호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위임전결구분중 1. 각실과 공문사항 15. 자료제출, 보고 및 문서란의 7.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하는 문서(1회보고승인)의 결재권자 "국장"을 "부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고 시**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80 호

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

<p>제 123 호 (73.4.4)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</p>	<p>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 8. 5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○ 전기공급설비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신설	가공송전선로	월계동(종암 T/L) - 도봉변전소	연장 8.5km	철탑및가공선로
"	종암 T/L	월계동 359-3, 4	면적 677 m <sup>2</sup>	지중 송전선로와연결 (철탑 1개소)

별첨 : 도면교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91 호

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82 호 (76.8.5)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송변전 건설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
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8. 12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도봉구상계동산 3 - 1 의 26 필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사업
3. 사업시행자의 주소·성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담인동 66 한국전력주식회사 송변전건설사무소소장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
 가. 착수 일 : 1976. 8  
 나. 준공예정일 : 1976. 10
5. 사업시행 규모  
 가. 철 탑 27 개

<p>나. 송전선로 8.5 km                  다. 시설면적 2,433 m<sup>2</sup> (736 평)                  6. 위치도면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                 도면생략                 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</p>	<p>권리명세 (별첨)                  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·성명 : 별첨</p>
---	--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및  
지목·지적·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철탑 번호	토지 또는 건물 소재지				소 유 자 관 계 인			
	동 명	지 번	지 목	지 적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6	도봉구상계동	산 3-3	임야	10	종로구예지동 260	박영록		
7,8	"	산 24-1	"	31	" 안국동 37	덕성학원		
9	"	산 44-2	"	11	"	"		
10	"	산 56	"	15	도봉구미아동 245-14	김형중	도봉구상계동 1013	송계순
11	"	산 62-1	"	9	대구시남구대명동 1733-21	이태하		
12	"	산 105-11	"	10	도봉구상계동 996	문원록	" 1013	문무현
13	"	산 105-7	"	10	종로구효자동 96	박광석		
14	"	산 110-1	"	14	동대문구상봉동 402-20	길용철		
15	"	506-1	전	20	도봉구상계동 506-1	최득성	도봉구상계동 471	최명달
16	"	513	답	40	" 466	성명수		
17	"	863	"	24	" 1013	문사용		

철답 번호	토지또는건물소재지				소유자		관계인	
	동명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
18	도봉구상계동	855-7	답	37	도봉구상계동1013	서은남		
19	"	818-7	"	17	" 154	정원봉		
20	"	814-1	"	18		서울대학		
21	"	796-1	"	23	동대문구신설동96-19	유경화		
22	"	792-1	"	21		서울대학		
23	"	785	"	16		"		
24	"	755-1	"	16		"		
25	"	773-2	"	26		"		
26	"	769	"	33		"		
27	"	735	전	19	국유		도봉월계 680	한창수
28	"	751	"	28	도봉구월계동 684	이봉순		
29	"	232	답	20	성북구장위동 89	박용기		
30	"	260-1	잡	23	서대문북아현 163-42	이봉춘	성동구의 66-17	김영희
31	"	301-1	답	40	성북구장위동115	우태섭		
32	"	359-4	잡	132	서대문대조동D7-3	허홍열		
33	"	359-3	"	73	"	"		
계				736				

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 
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성명

철 람 번 호	토지 또는 건물 소재지				소 유 자		관 계 인	
	동 명	지 번	지목	지적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6	도봉구상계동	산3의3	임야	10	종로예지 260	박영록		
7,8	"	산24의1	"	31	" 안국 37	덕성학원		
9	"	산44의2	"	11	" " 37	"		
10	"	산56	"	15	도봉미아 245의14	김형중	도봉상계 1013	송계순
11	"	산62의1	"	9	대구남구대명 1733의21	이태하		
12	"	산105의11	"	10	도봉상계 996	문원록	도봉상계 동1013	문무현
13	"	산105의7	"	10	종로효자 96	박광석		
14	"	산110의1	"	14	동대문상봉 402의20	길용철		
15	"	506의1	전	20	도봉상계 506의1	최득성	도봉상계 471	최명달
16	"	513	답	40	" " 1013	성명수		
17	"	863	"	24	" " 466	문사용		
18	"	855의7	"	37	" " 1013	서은남		
19	"	818의7	"	17	" " 154	청원봉		
20	"	814의1	"	18		서울대학		
21	"	796의1	"	23	동대문신설 96의19	유경화		
22	"	792의1	"	21		서울대학		
23	"	785	"	16		"		
24	"	775의1	"	16		"		
25	"	773의2	"	26		"		
26	"	769	"	33		"		

첨 단 번호	토지 또는 건물 소재지				소 유 자		관 계 인	
	동 명	지 번	지목	지적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27	도봉구상계동	735	전	19	국 유		도봉월계 680	한창수
28	" "	751	전	28	도봉월계 684	이봉순		
29	" "	232	답	20	성북장위 89	박용기		
30	" "	260의1	잡종지	23	서대문북아현 163의42	이봉춘	성동구의 66-17	김영희
31	" "	301의1	답	40	성북장위 115	우태섭		
32	" "	359의4	잡종지	132	서대문대조 197의3	허홍열		
32	" "	359의3	"	73	" " "	"		
계				736명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197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  
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 
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 변경,  
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 
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

설부 고시제 123 호(73.4.4)의 관  
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 
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
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 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 
게 한다.

1976.8.17

서울특별시장

○ 도로신설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 분	등분	유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 변 경 (폐지)	소 로	2	8 m	130 m	망원동 428-7	망원동 428-8	교지구네
	"	"	"	"	"	"	구획정리
기 변 경 (폐지)	소 로	2	"	35 m	망원동 426-11	망원동 426-11	도로폐지
	"	"	"	"	"	"	"
신 설	"	3	6 m	145 m	망원동 426-34	망원동 427-17	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 끝.

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198 호

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 73.4.4 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8.17  
서울특별시장

가. 전기공급설비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전기공급설비	성북구중암동산 18-1	2,327 m <sup>2</sup>	
	(중압변전소)	동대문구청량리동산 5-12	(704 평)	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 끝.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199 호

도시계획시설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지적승인

1. 주택건설 촉진법 제 18 조에 의한 건설부 고시 제 21 호 ( 76.2.26 ) 제 30 호 ( 76.3.13 ) 및 제 38 호 ( 76.3.29 )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대통령령 제 7754 호 ( 75.8.22 )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8.17  
서울특별시장

시 설 명	위 치	면 적	시 행 자	비 고
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	강남구도곡동 산 6-12 외	188,423㎡ (56,998명)	대한주택공사 사장 양택식	

※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 
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함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201 호

도시계획용도지구 (풍치지구) 일부 변경 지적 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28 호 (76.8.13)로 변경 결정된 당시 관내도시계획 (풍치지구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

(73.4.4)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8.19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용도지구 (풍치지구) 변경지적승인 조서

구 분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풍치지구해제	서대문구연희동산 4-32	16.635	

**공 고**

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8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65 호 (76.7.15)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3 조제 5 항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4.4) 가. 공 고 내 용
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6.8.17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사업	명 칭	사업시행지	면 적	시행자	비고
도시계획사업 (학 교)	신신림국민학교 성동중학교	관악신림 313-2 외 10필 성동화양지구 18구획외 3 필	4,677㎡ 4,527㎡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"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90 호

환지 계획 변경 공람 공고

- 1. 영동 (제 1 지구)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중 일부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.
- 2.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성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- 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류를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.

1976. 7. .

서울특별시장

환지계획변경내역

가. 사업명 : 영동 (제 1 지구 1 공구)

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면적 : 53,970.8 평
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반포동 269 번지의 124 필지 (2-38 구획, 310-317 구획, 320-322 구획)

사 령

◎ 1976.8.11

마포구 지방행정 사무관 박 화 수 행정사무관에 임함.  
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근무를 명함.

◎ 1976.8.16

도봉구 지방토목사 김 종 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주택개량과 지방지적 기사보시보 도 영 회 지방지적기사보에 임함.  
주택개량과 근무를 명함.

주택행정과 지방지적 기사보시보 김 기 환 지방지적기사보에 임함.  
주택행정과 근무를 명함.

자동차정비 지방기계 사업소 김 형 주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주택건설 지방건축사 이 승 구 사업소 기사보에 임함.  
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.

도 봉 구 지방보전 박 원 중  
 도봉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

도 봉 구 지방보전 김 정 구  
 관악구 근무를 명함.

주택건설사업소 지방기재 송 춘 재  
 자동차정비사업소 근무를 명함.

자동차정비사업소 지방기재 김 윤 일  
 지방기제기좌에 임함.

주택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.

주택정비과 지방토목과 조 규 전  
 주택정비과 항축제장에 포함.

주택정비과 지방토목과 김 광 개  
 항축제장 기

공원과 공원개발제장에 포함.

공원과공원개발 지방토목과 어 윤 화  
 개발제장 기

강남구 근무를 명함.

강 남 구 지방토목과 문 강 호  
 성북구 근무를 명함.

© 1976.8.17

세 정 과 지적기사보 심 희 복  
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© 1976.8.18

보건사회국 지방의무정 최 한 상  
 의약과 기  
 의무기정에 임함.

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 
 의약과장에 포함.

중구토목과 지방토목과 김 정 근  
 토목기좌에 임함.

중구 토목과장에 포함.

영등포구 지방토목과 우 상 응  
 토목기좌에 임함.

영등포구 토목과장에 포함.

서대문구 지방토목과 김 영 호  
 토목기좌에 임함.

서대문구 토목과장에 포함.

성 북 구 지방토목과 조 명 환  
 토목사

도동구 근무를 명함.

가축위생연구소 지방수의보 김 기 근  
 검사 소 사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 
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  
 에 처함.

도 봉 구 지적기원 이 상 윤  
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 
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 
 견책에 처함.

도봉구보건소 지방보전 김 형 태  
 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 1 항의  
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.  
 (76.8.10-76.9.10)

서울특별시장